

청주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나1694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한범석

피고, 피항소인 음성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이세호

변 론 종 결 2021. 7. 15.

판 결 선 고 2021. 8. 26.

제1 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9. 24. 선고 2020가단20138 판결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D, E, F, G에게 각 6,047,890원, 선정자 H, I, J에게 각 2,015,96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이 사건

2020. 6. 30.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2020. 1. 10.부터 충북 음성군 K 도로 4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원고와 선정자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원고, 선정자 D, E, F, G에게는 매월 각 112,242원, 선정자 H, I, J에게는 매월 각 37,41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추가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멸실된 바 없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거기에 원고의 부친인 N이 소유자라고 등재되어 있을 뿐 피고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기재는 전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 등에서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지 않은 채 그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잘 알면서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고, 그러한 지적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소유권 취득가능성을 긍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점유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지적공부 등이 멸실된 바 없이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는 경우까지 함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가능성을 수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다.

## 나. 판단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반복된다거나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 등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참조).

위 판례는 일제강점기 때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지적공부가 전란 등으로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가 타에 처분되었음에도 계쟁 토지만이 오랜 기간 처분되지 않았거나 장기간 소유권을 행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토지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지적공부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토지 취득의 가능성이 봉쇄되는 것은 아님을 밝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거나<sup>1)</sup> 일제 강점기에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 그 지적공부가 멸실되지 않고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이 쉽게 반복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그동안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던 대법원의 입장을 정리한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는<sup>2)</sup>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일제강점기 때 도로로 편입된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가 전란 등으로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음이 인정되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반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태환, 판사 최유나, 판사 이성기

1) U, 일제강점기 때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 유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99호, 법원도서관, 2014, 31쪽

2) V, 국가 등의 무단점유 인정 요건 - 일제 강점기에 도로로 편입된 경우를 중심으로 -, 민사판례연구 38권, 박영사, 2016, 133쪽